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생활 안전정보 나누리방

2022년 7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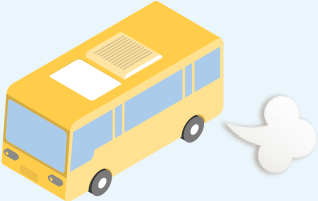

튼튼먹거리 탐험대
이동 차량 체험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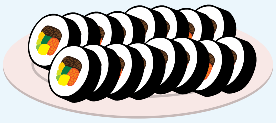

식중독 예방하는
위생적인 김밥 조리법

이달의
보도자료

최근 법령 등
제 · 개정 정보

튼튼먹거리 탐험대 이동차량 체험교실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2022년 3월 ~ 12월 ('16~, 매년)
- 대상 및 내용: 미취학 어린이(6~7세) · 초등학교 및 지역 축제 등 대상, 특수차량 이용* 한 식생활 교육 및 요리체험 교실** 운영

* (튼튼차량) 진 · 출입 및 주차 공간 확보 용이한 지역 위주 식생활 교육

** 나트륨 · 당 줄이기 교육 및 실습, 식중독예방 교육, 영양표시 읽기 등

■ '22년 사업 주요내용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체험교실 운영**
-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구성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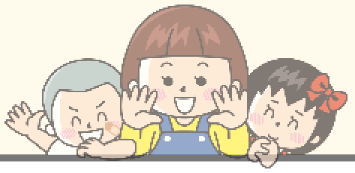

구분	영양 · 식생활 교육	조리 실습	설문조사
초등학교 저학년 (단맛편)	당류 섭취 줄이기, 영양표시 읽는법, 식중독 예방 교육	당류 저감 레시피	- 교육 전 - 교육 후
초등학교 고학년 (짠맛편)	나트륨 섭취 줄이기, 영양표시 읽는법, 식중독 예방 교육	나트륨 저감 레시피	- 교육 전 - 교육 후
미취학어린이 (6~7세)	초등 저학년 교육 내용 수정	당류 저감 레시피	교육 소감 인터뷰

식약처는 앞으로도 성장기 청소년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체계적인 식생활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적인 김밥 조리 요령

최근 5년('17년~'21년, 잠정) 동안 **살모넬라 식중독**으로 발생한
총 110건 6,838명의 환자 중 41건 5,257명(77%)이 **달걀 또는**
달걀 지단 등이 포함된 식품에 의한 발생이므로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음식(김밥, 밀면, 냉면 등)의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전한 김밥 만들기 ■

가열조리 끝났거나
그대로 먹는 식재료는
맨손 취급 금지! 위생장갑 착용!

여름철 김밥은 초밥으로 만들고
밥과 지단을 식힐 때
선풍기 사용하지 않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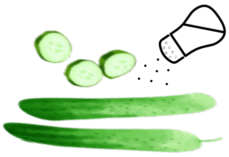

더운 계절에 채소 재료로는
식초에 절인 오이가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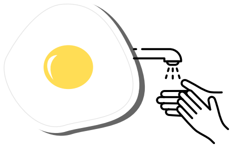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달걀 만진 후**
반드시 비누로 손 씻기
- 달걀껍질 만졌거나 달걀물이
묻은 손으로 다른 식재료 접촉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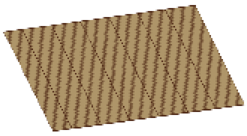

김발은 1회용 비닐을 씌워
사용하거나 **열탕 소독한**
실리콘 소재 사용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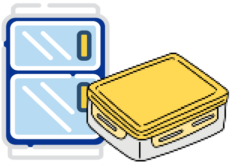

김밥 재료를 담는 쟁반은 **알루미늄**
호일 또는 종이호일 등을 깔아 준비하고
김밥 재료 보관통은 **냉장보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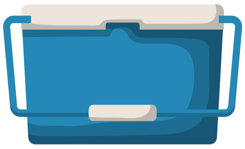

김밥을 외부로 가져갈 때는
아이스 가방에 보관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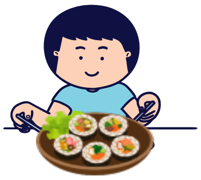

조리(포장) 한 김밥은
가급적 **2시간 이내 섭취 권장**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이달의 보도자료

출처: https://www.mfds.go.kr>알림>보도자료

◆ 소규모 식품 · 축산물 업체 해썹 인증 수수료 30% 감면

(올해 12월 31일까지 인증 수수료 한시적 감면 시행)

신규로 해썹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되어 **해썹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대상, 올해 12월 31일까지 신규 인증 또는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소규모 업체: 1.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첨가물) 제조 · 가공업체, 축산물가공업체,
2. 연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 현행 수수료: (식품영업자) 인증 · 연장 신청수수료 유형(품목)별 20만원
(축산물 영업자) 인증 · 연장 심사수수료 업종별 · 규모별 34만원~90만원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령 등 제 · 개정 정보

◆ 나트륨 · 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22.6.10)

● 주요내용

1. 자사유사제품의 정의 개정(제2조)
2. 적용대상 개정(제3조)
3. 나트륨 · 당류 저감 표시 식품의 세부분류(별표1)

◆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22.6.15)

● 주요내용

1. 이력추적관리 정보연계 시점 개선(안 제8조 제2항)
2. 비대면 등록심사 및 조사 · 평가 근거 마련(안 제5조의 2)
3. 식품사고 등 발생 시 이력추적관리정보 제공 근거 마련(안 제9조 제4항)
4. 조사 · 평가 계획 보고기한 삭제(안 제5조제1항)

"청렴한 식약처 국민 안심의 시작"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

-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

♣보호조치 요구 방법

수신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대표전화 국번없이 110(24시간 운영), 1398(부패, 공익침해행위 관련)
팩스 044-200-7971

*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s://www.mfds.go.kr)> 법령, 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제.개정고시 등 에서 확인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